

에이즈·결핵관리팀의 탄생배경

1985년 처음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는 재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여 에이즈 예방에 나섰다. 그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었던 곳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의 에이즈 센터로 이를 중심으로 연구, 실험실 운영, 전문가 훈련 등의 기술적인 지원이 전개되었다. 보건복지부에 속해있던 방역과에서 에이즈 예방관련 활동을 진행하다가 국립보건원 소속으로 방역과가 옮겨와서 계속적으로 에이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4년도에 방역과로부터 에이즈·결핵관리과가 독립

된 부서로 발돋움 하였고, 2005년도에는 에이즈·결핵관리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 그 중 에이즈전담팀은 팀장 1인, 연구관 1인, 연구사 1인과 연구원 9인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사업을 주도해 가고 있다.

HIV/AIDS 예방 홍보 활동 강화

전염병인 에이즈는 그 전파경로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만 매년 HIV/AIDS 신규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예방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방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 편집실

2004년 12월말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에이즈업무를 독립시켜 탄생한 에이즈·결핵관리팀을 찾아보았다.

전 국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인을 조기 발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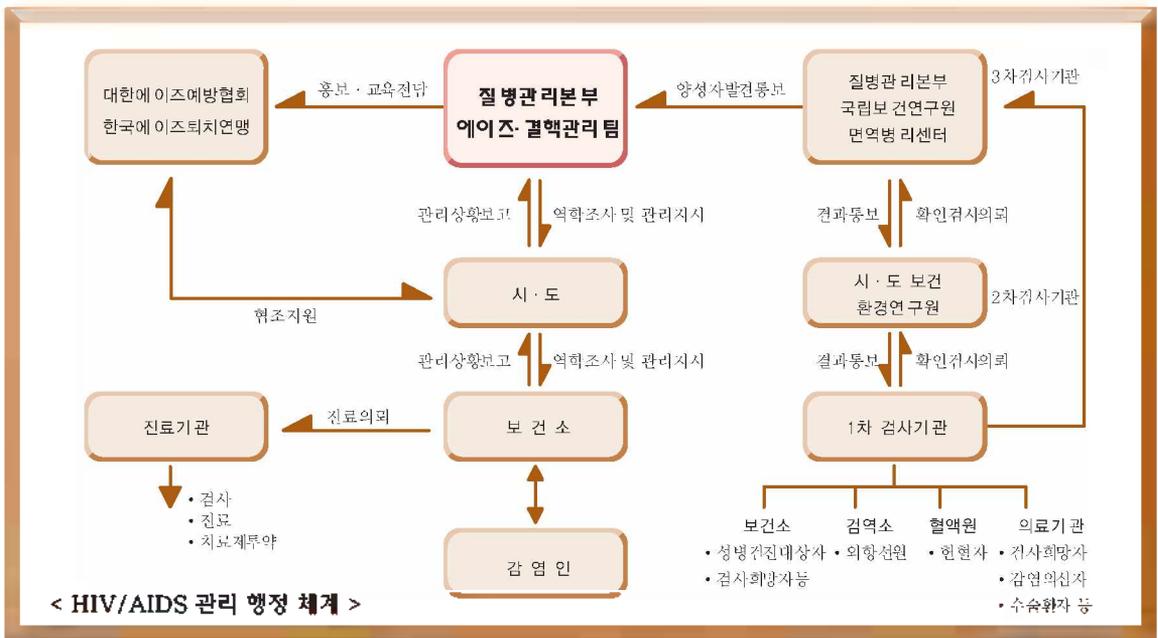
발견된 감염인을 관리하여 전파를 방지,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법은 전 국민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한 성생활을 통하여 에이즈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효과적 방안의 하나가 집단별 예방교육활동이다. 전문직종사자(의사, 간호사, 양호교사, 임상병리사 등) 강사 요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하며, 특수집단(특수업체부, 유흥업종사자, 동성애자 등)에 적합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청소년, 군인, 학생, 외국인 등 연령별, 집단별 특성에 알맞은 예방교육 확대에 힘쓰고 있다.

에이즈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이즈정보센터(www.



aidsinfo.or.kr)와 24시간 상담전화(1588-5448, 1588-2437)를 통해 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지하철, 서울시내버스, 새마을호, 전광판에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며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거리 캠페인, 콘돔 보급 사업을 강도 있게 펼치고 있다.

감염인의 발견과 관리

성병진전대상자, 동성애자 등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인을 조기발견하고 전파를 예방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검사 및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익명검사제도도 활성화시키고 있다.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시 개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감염인의 거주지변동과 전파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며, 감염인의 신상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파악하고 환자로 진전 시 환자전환보고를 하며, 상담센터 및 감염인 상담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HIV감염인(환자) 채혈검사시 주사침 등에 의한 보건요원의 사고와 실험연구자 등의 실험·검사 시 발생하는 오염사고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과 기타 업무

치료제투여는 에이즈 감염인의 발병을 억제, 지연시켜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가시적 지원으로 감염인의 관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미발견 감염인의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은둔화하여 급속히 전파되는 에이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진료비 청구는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소정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시·도 및 관할보건소에서 지급한다.

교도소 수형자나 HIV/AIDS 항체양성자로 판정된 외국인 감염인의 경우도 적절히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이 에이즈 감염인 또는 환자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사망자 발생 시 사망일, 사망원인, 사망 장소, 사망 후 부검 유무, 사체 처리 방법 등을 확인한 후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또는 사체검안서등을 첨부하여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면으로 보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관리팀

☎ 02)380-1442~3, 385-0260 / http://www.cdc.go.kr